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2
----------	-----

제출연월일 : 2019년 2월 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61명 (7,255명 → 7,416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증 134명(6,759명 → 6,893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증 27명(491명 → 518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61명 (7,255명 → 7,416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134명 (6,761명 → 6,895명)

- 5급 이하 소계: 증 134명 (6,679명 → 6,813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27명 (491명 → 518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 : 증 27명 (441명 → 46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3]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별첨 2]

다.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19. 1. 22. ~ 2019. 1. 25.) 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55” 를 “7,41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759” 를 “6,89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91” 을 “518” 로 한다.
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7,41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89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9		28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813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51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68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255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6,759명</u></p> <p>3. 교육전문직원 정원 <u>491명</u></p> <p>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한시정원)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416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 <u>6,893명</u></p> <p>3. ----- <u>518명</u></p> <p>조례 제667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삭제></p> <p>[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255</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255</u>					정무직 계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시의회 사무처</th> <th>본청</th> <th>교육 지원청</th> <th>공립의 각급 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7,416</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416</u>					정무직 계	1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255</u>																																				
정무직 계	1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u>7,416</u>																																				
정무직 계	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761					일반직 계	6,895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39		28	11		4급	39		28	11	
4·5급	7		7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679					5급 이하 소계	6,813				
전문경력관 소계	9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91					특정직 계	518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41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68				
<p><비고> 제2조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p>						<p><삭제></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161명 증원,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

2. 비용추계의 전제

일반직 134명【‘5급 이하’ 134명】, 특정직 27명【‘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세입	-							
	소계(a)							
세출	인건비	12,761,034	13,224,260	13,704,300	14,201,766	14,717,290	68,608,650	
	소계(b)	12,761,034	13,224,260	13,704,300	14,201,766	14,717,290	68,608,650	
□ 총 비용(a-b)		12,761,034	13,224,260	13,704,300	14,201,766	14,717,290	68,608,6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2,761,034	13,224,260	13,704,300	14,201,766	14,717,290	68,608,650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2,761,034	13,224,260	13,704,300	14,201,766	14,717,290	68,608,65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황혜은 주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일반직: 134명 증원
- 특정직: 27명 증원

2. 비용소요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1차년도 (2019년)	12,761,034	○ 인건비 추가 소요액: 12,761,034천원 - 일반직: 72,822천원 × 134명 = 9,758,148천원 - 특정직: 111,218천원 × 27명 = 3,002,886천원
2차년도 (2020년)	13,224,260	○ 인건비 추가 소요액: 12,761,034천원 × 103.63% = 13,224,260천원
3차년도 (2021년)	13,704,300	○ 인건비 추가 소요액: 13,224,260천원 × 103.63% = 13,704,300천원
4차년도 (2022년)	14,201,766	○ 인건비 추가 소요액: 13,704,300천원 × 103.63% = 14,201,766천원
5차년도 (2023년)	14,717,290	○ 인건비 추가 소요액: 14,201,766천원 × 103.63% = 14,717,290천원
계	68,608,650	

※ 비용추계 방법

- 2차년도 ~ 5차년도

: 2019년도 처우개선을 3.63%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 적용

【별첨 3】 관계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27.]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2.27., 일부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